

제 호

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

설립자 명:

운영자 명:

「도로교통법」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1. 명 칭

2. 위 치

년 월 일

시·도경찰청장

직인

주 : 1.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,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2. 이 등록증의 효력이 없게 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